

Legislative & Policy Weekly

#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11** | 2023.11.27. (2023.11.20~11.26)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2.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10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11.20~11.26)**

### 【정부의 주요 정책】

지난주 발표된 정부의 주요 정책 중에서는 **11/24 법무부**가 일반주주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기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선진적인 법질서 인프라 구축하기 위하여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물적분할 반대주주 보호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상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방안’을 확정 발표**한 바, 전산업부문 · 국민생활속 디지털기술을 접목한 탄소감축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한국형 그린디지털센터 개발 등 디지털 부문 저전력·고효율화를 추진하며, 탄소중립 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산업 육성 등 그린 디지털 생태계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입법(행정)예고】

입법예고 중 관심있게 살펴볼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2024년 3월 15일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열람 및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요구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함께, 디지털 전환의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특수한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대리점에게 단체구성권 및 협의권 등을 부여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며, 대리점의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강화하고자 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의원 등 10인)」**,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용역 등을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등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와 입증자료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계약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의원 등 10인)」**,

금융회사가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출 이용자의 객관적 상환능력을 고려하도록 하고,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0인)」**,

국내 통신산업의 발전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콘텐츠사업자 제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 제외) 및 전송망사업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각각 적용되는 49%의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운영찬의원 대표로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력망 인프라 건설을 위한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은 재생에너지 전원에 특정되지 않으며, 주민수용성 확보도 부족한 면이 있어 이 문제를 개선하고 국가 예산 투입의 근거를 마련하여 송·배전 설비의 적기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 계통 확보 특별법안(양의원의원 등 12인)」,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 제정을 통해, 간호사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간호법안(고영인의의원 등 21인)」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핵연료물질 등의 정련·변환·가공 사업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사용후 핵연료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각각 받도록 이원화되어 있는 핵연료주기사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개편하여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도록 일원화함으로써 원자력 안전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핵연료주기시설 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한편, 원자력 관계 사업자 중 방사선의 장애(障害)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1/30(목), 12/1(금) 양 일간에는 상정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개최 예정되어 있으며, 12/1(금)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인사청문특위에서는 헌법재판소장(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대법원장(조희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 목 차

##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법무부) ..... 6
- 제3회 국가전략기술(첨단바이오 분야) 포럼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7
- 민관 36개 기관·단체, 국제적 지식재산 침해 대응 방안 모색(문화체육관광부) ..... 8
-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방안’ 확정(환경부) ..... 9

## II. 입법(안) 동향

###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 12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2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3

###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 14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 14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15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개인정보보호위원회) ..... 16

###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 18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의원 등 10인) ..... 18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의원 등 10인) ..... 19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의원 등 10인) ..... 19
-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심상정의의원 등 10인) ..... 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의의원 등 13인) ..... 21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2인) ..... 22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등 10인) ..... 22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의원 등 10인) ..... 23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의원 등 10인) ..... 23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의원 등 10인) ..... 24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의원 등 12인) ..... 25

|                                                            |    |
|------------------------------------------------------------|----|
|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 25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등 11인) .....                 | 26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1인) .....                 | 27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의원영의원 등 11인) .....                        | 27 |
| •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 계통 확보 특별법안(양의원영의원 등 12인) .....               | 28 |
|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의원영의원 등 10인) .....                      | 29 |
|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1인) .. | 30 |
| • 간호법안(고영인의원 등 21인) .....                                  | 30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의원 등 13인) .....                         | 32 |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의원 등 13인) .....                  | 32 |
|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의원 등 11인) .....          | 33 |
|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2인) .....                       | 33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1인) .....                         | 33 |
|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                        | 34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2인) .....                     | 34 |
|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                       | 35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의원 등 10인) .....                       | 35 |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                       | 36 |

###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본회의
2. 상임(특별)위원회

###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10호) 중 국회 주 [바로가기](#) 자료 첨부

###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1.20~11.26)

[바로가기](#)

- [건설/부동산] 부실 해외 부동산 펀드 대응방안
- [기업지배구조] 주주경영권분쟁팀 뉴스레터 - 4. 의결권 부당제한과 임직원의 책임
- [방송통신(TMT)] 신산업 성장을 위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핵심과제 추진
- [환경] 전기차 폐배터리 등 7개 품목이 ‘순환자원’으로 지정되어 폐기물 규제가 면제됩니다  
-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정비

2023-11-24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

\* 주식매수청구권:기업 구조변경 등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회사에 일정 가격으로 주식 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개정안은 일반주주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기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선진적인 법질서 인프라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 주주총회 통지, 투표, 회의 전반을 전자화 (안 제364조의2, 제363조제1항 등)
  - 정관에 따라 주주 전부가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안전전자주주총회 방식’과 주주가 소집지 출석과 전자통신수단 출석 중 선택할 수 있는 ‘병행전자주주총회 방식’의 개최 및 이를 통한 출석과 의결권 행사 허용
  -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관련 규정 정비
- ②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개선 - 물적분할 반대주주 보호 강화 등 (안 제530조의12제2항, 제374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6항 등)
  - 주요사업부 물적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변경 효력발생일까지 회사가 산정한 매수가액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 반대주주를 채권자 지위로 전환
  - 주식 매수가액에 다툼 발생 시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하여 주주에 통지한 매수가액 이상의 금액 공탁을 허용
  - 주주에게 구체적인 매수가액 산정근거 제시, 열람등사청구권 보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첨단바이오 분야의 연구자,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우리나라 첨단바이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임무와 기술개발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제3회 국가전략기술(첨단바이오 분야) 포럼’을 개최함

‘국가전략기술 포럼’은 기술패권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선점을 중심으로 한 탈세계화 움직임 등으로 과학기술이 우리나라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전략기술 분야별로 최고 전문가들이 함께 전략기술의 육성·확보 방향을 논의하는 장으로, 지난 4월 이차전지, 6월 수소에 이어 첨단바이오를 주제로 개최함

합성생물학, mRNA 기술 등으로 대표되는 첨단바이오 분야는 전세계적으로도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분야로, 신약 제조부터 디지털헬스케어 등 해당되는 기술의 범위가 넓을 뿐 아니라, 디지털·AI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임

전세계 바이오산업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은 아직 미미한 상황이지만, 전통적인 바이오 분야와 달리, 첨단바이오는 아직 절대강자가 없는 신생 분야이고, 소규모 개발도 가능해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 분야 컨트롤타워인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는 ’22년 10월에 첨단바이오를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고, ‘합성생물학’, ‘유전자·세포 치료’, ‘감염병 치료·백신’,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을 중점기술로 선택한 바 있음

또한,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전략기술을 육성·확보하기 위해 ‘디지털·바이오 융합을 통한 바이오제조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한 첨단바이오 분야 전략로드맵을 지난 10월 수립하였고, 수립된 로드맵은 향후 첨단바이오 분야의 육성정책 수립이나 연구개발 투자 등에 활용할 계획임을 밝힘

< 참고:첨단바이오 분야 중점기술별 임무 >

|              |                                                                                     |                                              |                   |                                                                                      |                                       |
|--------------|-------------------------------------------------------------------------------------|----------------------------------------------|-------------------|--------------------------------------------------------------------------------------|---------------------------------------|
| 합성생물학        |  | 바이오제조<br>기간·비용·속도 혁신<br>(항체 생산효율 10배)        | 유전자·세포<br>치료      |  | 난치성 질환 치료제<br>첨단 기반기술 확보<br>(임상단계 진입) |
| 감염병<br>백신·치료 |  | 글로벌 보건동맹 협업 하<br>100일 내 백신 확보<br>조기대응 시스템 구축 | 디지털헬스데이터<br>분석·활용 |  | 빅데이터 구축·<br>특화 AI 개발로<br>맞춤형 의료 구현    |

문화체육관광부

**민관 36개 기관·단체, 국제적 지식재산 침해 대응 방안 모색**  
 - ‘제7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회’ 개최  
 -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추진현황과 성과 공유

2023-11-23

문화체육관광부는 ‘제7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회’를 개최하고, 문체부를 비롯한 8개 정부부처, 8개 공공기관, 20개 콘텐츠단체 등 총 36개 기관·단체가 모여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콘텐츠업계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함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은 지난 2월부터 문체부 주도로 범정부 협의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으며, 지난 7월 31일, 민·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함

###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추진현황과 성과 공유, 이행 속도 높이기로 함

-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주무 부처로서 근절대책의 핵심과제인 저작권 범죄 수사조직 확대 개편, 인터폴 내 ‘케이(K)-콘텐츠 침해 수사협력관 지정’ 등의 추진현황과 성과 공유

#### < 문체부의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주요 이행현황 >

| 구 분                            | 주요 이행현황                                                                                                                                                      |
|--------------------------------|--------------------------------------------------------------------------------------------------------------------------------------------------------------|
| ① 제2누누티비 집중 대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통위·과기부 협력, 누누티비 유사사이트 접속차단 요청(4건 12회)</li> <li>○ 특사경·경찰 온라인 불법복제 합동단속 연계, 집중단속기간 운영</li> </ul>                     |
| ② 국제 수사공조 강화 및 해외 불법유통 대응체계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폴 내 ‘케이(K)-콘텐츠 침해 수사협력관’ 지정(’23년 8월)</li> <li>○ 문체부(저작권특사경)-미국토안보수사국 국장급 협약 추진(’23년, LOA 협정서)</li> </ul>          |
| ③ 과학수사 기반 확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권 범죄 수사조직 확대 개편(2개팀→4개팀)<br/>* 과학수사대 및 범죄분석실 출범(’23년 10월)</li> <li>○ 경찰청 내 저작권 전문경찰 지정(’23년 8월~, 4개지역)</li> </ul> |
| ④ 인식전환 프로젝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대사 위촉 및 저작권 보호 캠페인 출범(’23년 9월) 등</li> </ul>                                                                       |

#### ② 민관 협력과 정보공유, 침해 대응 특별전담팀, 국제공조 강화 등으로 해외 지식재산 침해에 대응

- 방송협회와 웹툰산업협회, 게임산업협회 등은 케이(K)-콘텐츠가 해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며 민·관 정보교류와 협력 강화, 침해 대응 관련 정보공유, 국제공조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건의
- 문체부는 현재 보호원이 운영하고 있는 ‘저작권 보호 실무협의체’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 효율적으로 민관 협력과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 업계·학계·법조계가 참여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 특별전담팀(TF)도 운영할 계획
- 한류 소비국을 중심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부 간 양자 회의를 보다 확대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



환경부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방안’ 확정**

- 전산업부문 · 국민생활 속 디지털기술 접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박차
- 한국형 그린디지털센터 개발 등 디지털 부문 저전력·고효율화
- 탄소중립 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산업 육성 등 그린 디지털 생태계 구축

2023-11-23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방안’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됨

강도 높은 폭염, 산불, 호우 등 이상기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확대되고 있고 최근에는 기후를 과거로 되돌릴 수 없게 되는 임계점\*에 근접함에 따라 탄소감축과 관련한 제도적 지원과 규제를 도입·강화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등 탄소중립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지구 온도가 1.5°C 상승하는 시점으로, ‘22년 기준 1.2°C상승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은 에너지 등의 효율적 관리와 사용, 자원의 순환을 지원하여 탄소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음. 올해 초 세계경제포럼(WEF)은 자원, 에너지, 건물, 수송 등의 분야에 디지털을 적용해 2050년까지 전 세계 탄소배출량을 최대 20%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발표하는 등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함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후위기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밝히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에너지 이용확대, 스마트모빌리티 확산, 녹색항로 및 항구의 구축·연결 등 APEC 차원의 특별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대한민국이 기후격차 해소에 책임있게 기여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음

정부가 올해 탄소중립 국가 기본계획을 발표(’23.4.10)하고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부처가 소관 부문별로 추진하는 정책에서 디지털의 중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음. 이에 과기정통부는 탄독위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디지털 전환을 통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함

이번에 발표한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 방안’은 △전산업 부문의 탄소감축 촉진, △디지털 부문 고효율화·저전력화, △그린 디지털 생태계 구축이라는 3대 전략을 중심으로 6개 과제를 마련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디지털로 전산업 부문의 탄소감축 촉진**

- 우선, 에너지·수송·건물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과 국민생활에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디지털트윈 등 디지털을 접목할 수 있도록 분야별 기술 개발
- 확보된 디지털 기술과 솔루션의 산업 전반 확산

## &lt; 분야별 주요 추진 방안 &gt;

|          |                                                                                                                                                 |
|----------|-------------------------------------------------------------------------------------------------------------------------------------------------|
| ① 에너지    | ◇ 전력 공급·수요의 불확실성 관리를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디지털을 활용한 분산에너지, 재생에너지 등 활성화 추진<br>• 기술, 인력 등 정보제공을 위한 분산에너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br>• 날씨에 민감한 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기상지원체계 구축 |
| ② 수송     | ◇ 수송 부문 스마트화로 에너지 효율화 추진<br>• 최적항로를 도출·운항하는 자율운항선박 실증                                                                                           |
| ③ 건물     | ◇ 노후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고도화*<br>* 소요시간 단축(1/3수준), 에너지 성능 진단 정확도 개선(±15% 이내) 등                                                              |
| ④ 농·축·수산 | ◇ 최적 생육환경(온도, 습도 등) 설정을 통해 에너지를 효율화하는 스마트 생산시설(스마트팜·축사·양식장) 확산 및 기술개발                                                                           |
| ⑤ 자원순환   | ◇ 폐기물 자동 선별·처리를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자원순환 달성<br>• 폐배터리 및 폐플라스틱 재활용률 개선 기술 개발<br>• 해양폐기물 특화 선별·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스마트 중간 집하장을 설치하여 재활용 활성화                     |
| ⑥ 실생활    | ◇ 탄녹위에 제한된 디지털 관련 국민기술제한 실천을 디지털 탄소중립 협의회(신설예정)를 통한 사업 발굴 및 확산 방안 마련<br>* (예) 미사용 전기제품 낭비전력 자동차단 등 '19년부터 156건 제한                               |

## ② 디지털 활용으로 증가하는 디지털 부문 자체의 탄소배출량 감축

- 디지털 활용이 산업 전반의 에너지를 감축시키는 반면, 디지털 자체 에너지 소비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챗GPT는 구글 등 기존 검색엔진보다 10배의 전력을 소비('23, 학술지 JOULE)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선 저전력·고성능 데이터센터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

\* 서버, 저장장치, 랙 등 컴퓨팅 IT장비 에너지 효율화, △냉각·공조 및 전력 설비 등 기반 시설의 저전력화,

△에너지 소비 모니터링·최적화를 위한 통합제어 솔루션 기술 개발 예정

- 이동통신 기술 고도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네트워크를 저전력화\*

\* △전력효율 극대화를 위한 5G·6G 소재·부품·장비, △네트워크 전력을 절감하는 지능형 에너지 최적화 솔루션 등 기술 개발 예정

## ③ 공공·민간에서 그린 디지털 전환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린 디지털 생태계 구축

- 탄소중립 관련 데이터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 데이터 활용을 위한 공유기반 구축
- 탄소중립 관련 데이터를 편리한 방식으로 제공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탄소공간지도 등의 플랫폼도 고도화
- 탄소회계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는 글로벌 추세를 고려하여, 탄소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MRV)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체계도 고도화할 예정
- 산업 부문별 탄소중립 기술의 감축 DB를 확보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관리 및 플랫폼 기술을 개발할 예정

## II. 입법(안) 동향

###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처명     | 내용                                        | 시행일자            |
|---------|-------------------------------------------|-----------------|
| 산업통상자원부 | <b>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b> | 2023-11-30 시행예정 |

생산·수입 등의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거나 소량 배출되는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889호, 2022. 6. 10. 공포, 2023. 11. 30. 시행)됨

이에 따라, 청정수소의 인증기준,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및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청정수소의 인증기준 (제34조의2 신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소 및 수소화합물의 인증기준을 정하고, 청정수소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에 대해서는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 따라 5등급 이내로 구분하여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②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제34조의5 신설)

- 청정수소 생산량·수입량·판매량의 미신고 등을 이유로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③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제34조의8 신설)

- 청정수소 인증업무 전담조직 및 운영인력 등 청정수소인증기관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또는 수소유통전담기관 등을 대상으로 인증운영기관 및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구분하여 청정수소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                                         |                 |
|-------|-----------------------------------------|-----------------|
| 국토교통부 | <b>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b> | 2024-11-22 시행예정 |
|-------|-----------------------------------------|-----------------|

터널 구조로 된 방음시설의 붕괴, 전도 등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별표 1의2 제1호)

국토교통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23-11-23 시행

최대안전경사각도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자동차에 교량점검, 이삿짐 운반을 위한 구조·장치를 갖춘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용 특수자동차를 추가하고,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점멸표시등의 작동 조건을 명확히 정비하며,

차량중량의 제원에 대한 허용차를 종전에는 중형자동차는 100킬로그램 이내, 대형자동차는 제원의 3퍼센트 이내로 각각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중형·대형자동차 모두 100킬로그램 이내 또는 제원의 3퍼센트 이내 중 더 큰 값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중형자동차에 대한 제작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8조, 제15조의2제1항제3호, 제88조의3, 제89조의2 등)

##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처명   | 예고 법령안            | 의견접수기간                 |
|-------|-------------------|------------------------|
| 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2023.11.24.<br>~12.07. |

식품 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예정인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안 제84조제2항 및 제3항)

- 면세 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10%p 추가 상향하는 제도를 '25.12.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자 함

※ 문의처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2, 팩스: 044-215-8068\)](tel:044-215-4322)

|       |                    |                        |
|-------|--------------------|------------------------|
| 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2023.11.24.<br>~12.15. |
|-------|--------------------|------------------------|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예정인 포장 김치, 젓갈류 등 미가공식료품과 커피, 코코아두 등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미가공식료품·수입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한시 면제 기한 연장 (안 제24조제1항, 안 제37조제1항, 별표 1, 별표 2)

- 데친 채소류 · 김치 · 장아찌 · 된장 등 단순가공식품의 경우 포장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25.12.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자 함
- 수입커피 · 코코아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25.12.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자 함

※ 문의처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2, 팩스: 044-215-8068\)](tel:044-215-4322)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튜닝부품을 판매하는 자를 제재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법률 제 19685호, 2023.8.16. 공포, 2024.2.17. 시행) 하였음

이에, 법 개정안에 따라 튜닝부품에 대한 성능 및 품질조사, 튜닝부품 인증기준·인증 방법 및 절차, 튜닝인증부품의 인증표시,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튜닝부품인증 업무의 대행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튜닝부품에 대한 성능 및 품질 조사 규정 마련 (안 제40조의11제1항)
  -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튜닝부품의 제작사 등이 튜닝부품인증을 거짓으로 하거나, 튜닝부품인증 내용과 다른 튜닝부품을 판매하는 등의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 ② 튜닝검사 기간 관련 규정 개선 (안 제56조제3항, 별지 제33호의3서식)
  - 도난, 압류, 교통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튜닝검사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사기간 연장을 신청할수 있도록 규정 개선
- ③ 튜닝부품 인증기준, 인증 방법 및 절차 관련 규정 마련 (안 제56조의2, 제56조의3)
  -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의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기준과 튜닝부품인증을 위한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마련
- ④ 튜닝인증부품의 인증표시에 관한 규정 마련 (안 제56조의4)
  -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을 신고행위로 허용
- ⑤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에 관한 규정 마련 (안 제56조의5)
- ⑥ 튜닝부품인증기관이 지정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를 당하게 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가 튜닝부품인증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안 제56조의6)
- ⑦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신청 등에 관한 규정 개선 (안 제108조, 별지 제73호의2서식)
  - 이륜자동차 튜닝 전·후의 주요제원을 비교할 수 있도록 주요제원대비표 서식을 추가하고, 이륜자동차 튜닝 확인 기간 및 확인 기간 연장과 관련한 사항을 자동차와 유사하게 개정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http://www.motw.go.kr) (전화: 044-201-3840, 팩스: 044-201-5584)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23.3.14.공포)에 따라 2024년 3월 15일 시행 예정인 일부 조항에 대해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열람 및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요구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함께, 디지털 전환의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특수한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또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 요건 및 의무 대상을 구체화하고,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 변경됨에 따라 의무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대상 및 기준·방법·절차 (안 제13조의2 신설)

- 법 제11조의2 신설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위해 하위 법령에 위임된 평가대상, 평가기준 및 절차, 자료제출 범위 등의 기준 및 절차 규정을 마련

##### ②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안 제21조)

- 정기조사의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매 2년 → 3년)하고,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및 ‘개인정보보호인증(ISMS-P)’ 대상 등 유사한 조사·점검이 있는 경우 제외 규정을 마련

#####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안 제31조제1항)

- 개인정보를 국외에서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그 사실과 해당 국가에 관한 사항, 국외 이전 시 법적 근거 등을 처리방침에 기재하도록 규정

#####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협의회 사업범위 (안 제32조, 제32조의2)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 제31조가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자격요건 및 적용대상의 기준 등을 규정
- 법 제31조에서 위임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가 수행하는 공동사업의 범위 구체화

##### ⑤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 제44조의2 제44조의4)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부·설명 등 요구권 신설(법 제37조의2)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요구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사항 및 공개사항 등 세부절차를 규정

##### ⑥ 손해배상책임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기준 (안 제48조의7)

- 법 제39조의7 개정으로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가 부여되는 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의무대상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의무면제 기준 신설

⑦ 규제의 재검토 (안 제62조의3)

- 규제개혁위원회 재검토기한 심사결과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의 재검토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 문의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전화: 02-2100-3057, 팩스: 02-2100-3006)

### 3. 법률 발의(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
|--------------------------------------------------------------------------------------------------------------------------------------------------------------------------------------------------------------------------------------------------------------------------------------------------------------------------------------------------------------------------------------------------------------------------------------------------------------------------------------------------------------------------------------------------------------------------------------------------------------------------------------------------------------------------------------------------------------------|----------------------------------------|---------------|
| 법제사법위원회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 2023-11-22 발의 |
| <p>현행법은 변호사가 소송행위 등 어느 일방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변호사가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게 된 사건에 대해 대리 등 직무수행을 제한하는 이른바 ‘쌍방대리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p> <p>그러나 대형 법무법인, 법무조합 등을 중심으로 약정 시 현행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2호에 대한 예외를 동의받거나, 민사사건에서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당사자의 소송행위를 대리하다가 다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위한 위한 소송행위를 하거나, 수사단계에서 변호사로서 피해자를 조력한 뒤 소송단계에서는 피고인을 대리하는 등 ‘쌍방대리 금지’를 형해화하는 사건 수임이 발생하고 있음</p> <p>또한 사건을 정식으로 선임하지 않고 선임 전 단계로서 법률상담을 하는 경우 예비적 위임관계가 성립하여 전형적인 쌍방대리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행법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음</p> <p>이에 현행법 제31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수임제한 행위의 구체적 사례를 추가하여 적시하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법률상담 등 쌍방대리 관련 수임 제한에 저촉될 수 있는 관계 법률사무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직무윤리 저촉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안 제31조제1항제4호 · 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p> |                                        |               |
| 정무위원회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의원 등 10인) | 2023-11-21 발의 |
| <p>현행법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공급업자의 구입강제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p> <p>그런데 현행법에는 대리점의 단체구성권 및 협의권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급업자와의 협상에 있어 거래상약자인 대리점 측이 일방적으로 각종 부당한 거래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됨</p> <p>이에 대리점에게 단체구성권 및 협의권 등을 부여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며, 대리점의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강화하여 대리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의5 및 제12조의6 신설)</p>                                                                                                                                                                                                                                                                                                                                         |                                        |               |

##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2023-11-21 발의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가맹계약의 갱신 등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본부가 물품 및 용역 등의 공급에서 높은 독과점가격으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취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강요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점포를 임대한 가맹점사업자들이 임대 계약기간과 가맹사업 계약기간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가맹계약 및 갱신 등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용역 등을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등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와 입증자료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계약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가 제12조제1항제3호의2 및 제13조의2 신설 등)

## 정무위원회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의원 등 10인)

2023-11-22 발의

현행법은 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도를 두어 물품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을 하고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포상 또는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도가 2007년에 도입·시행된 이후 법적 근거 마련, 우수 기업 포상,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을 통하여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그 이유로 짧은 인증기한, 정부 차원의 홍보 부족 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도의 인증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제도와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의 소비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

정무위원회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2023-11-23 발의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대한민국의 가계신용 잔액은 1,860조 원을 넘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105%에 이르렀고,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 역시 2022년 기준 206%에 이르는 등 가계부채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며 최근 지속된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 전체 가계 부채의 과반을 차지하는 변동금리 대출이용자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취약 차주 부실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또한 과도한 집값 상승과 이를 뒷받침하는 한국의 독특한 전세제도, 그리고 임대차시장의 금융화를 불러온 전세자금 대출 및 보증 정책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 증가는 주택시장의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임차인 등에게 전이시키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년간 약8배 증가한 전세자금대출과 약 1,0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세보증금은 갭투기의 재원으로 활용되어 전세사기 대란을 불러왔음

가계부채의 질적·양적 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는 소비 위축, 성장을 하락, 인적자본 사장, 사회보장 비용 증가로 이어져서 가계는 물론 국가 경제에 큰 손실을 가져옴.

이에,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 국가 상당수가 차주에게 상환의무가 있는 모든 대출을 포괄한 연간 원리금상환금액을 연소득 대비 40%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듯이 우리도 무분별한 대출 예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회사가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출 이용자의 객관적 상환능력을 고려하도록 하고,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도록 규제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금융산업과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이 법은 금융회사가 대출업무를 수행할 때 대출이용자의 변제능력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대출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제함으로써 대출이용자의 보호와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금융회사가 대출계약을 체결할 시 이 법에 명시한 주요 사항을 대출이용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그 내용이 기재된 대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함 (안 제5조)
- ③ 금융회사는 대출계약 시 대출이용자의 변제능력을 심사하도록 하고, 대출이용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출계약이나 대출이용자의 연간 소득 대비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나타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함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금융회사는 대출이용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제능력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대출이용자의 소득과 재산, 타인에 대한 지급보증 및 금융 대출채무액뿐만 아니라 임대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액 등도 포함한 기준으로 변제능력을 심사하여야 함 (안 제8조)



- 대출이용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관리하는 대출 원리금 상환정보와 국토교통부에 신고되는 주택임대차보증금정보 등을 활용하여 산정하도록 함 (안 제9조)

- ④ 대출이용자는 소득 감소, 금융시장 변화 등으로 변제능력이 약화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계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 ⑤ 금융회사는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 총액을 전체 대출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함 (안 제11조)
- ⑥ 금융회사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담보자산을 부풀리거나 상환 조건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과도하게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행위, 대출거래 분쟁 관련 강제 중재에 관한 사항을 설정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대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함 (안 제12조)
- ⑦ 금융회사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 연대보증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함 (안 제13조 및 제14조)
- ⑧ 금융회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대출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대출이용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함 (안 제15조 및 제16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의원 등 13인)

2023-11-20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징수곤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징수곤란 체납액”)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그러나 소액 체납자들을 특정하여 징수특례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음

폐업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고도 월평균 수입이 적고 무재산인 영세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체납액이 소액이라 할 지라도 징수처의 강제징수에 따른 생계 곤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며, 징수처도 실익없는 강제징수로 행정적 낭비만 더하게 되므로 시정이 필요함

이에, 폐업 후 3년이 경과했고 월평균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무재산인 자 중, 세무 채무 소멸 기간인 5년간 최저임금 총액에 상당하는 소액 체납액이 체납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한 영세납세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안 제99조의10)

## 기획재정위원회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2인)

2023-11-21 발의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부터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증권제도 시행(2019년) 이후 채권의 전자등록업무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국채의 발행 및 등록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이전부터 한국은행이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던 점을 감안하여 제도 시행 이후에도 한국은행이 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2조가 국채 중 국고채에만 적용되고 있어 원활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과 유통을 위해서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도 같은 내용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한국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를 조화롭게 규율하기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2조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어 원활한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과 유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13조제13항 및 제14항 신설)

## 기획재정위원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등 10인)

2023-11-23 발의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

그런데 현행법에 도심융합특구로의 기업 이전과 특구 내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감면 규정이 없어 도심융합특구의 조속한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기업과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5년간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75조의2 및 제156조)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등 10인)

2023-11-20 발의

현행법상 방송 및 통신 분야에 있어서 일정한 방송사업자 및 통신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지분 총합이 전체 지분의 49%까지로 제한되고 있음. 이는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 및 통신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음

그러나 방송 분야에 있어서는 최근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면서 그 위상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해외 주요 방송미디어 사업자들이 앞다투어 K-콘텐츠 제작 투자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고도의 콘텐츠 제작·유통 역량을 보유한 국내 방송사업자에 대한 투자수요도 함께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 경쟁 및 대작 콘텐츠 제작 확대에 의해 제작비 부담이 빠르게 높아지는 제작환경 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한편, 앞으로도 이렇게 달라진 K-콘텐츠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방송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풍부한 제작자원 환경 조성이 필수적임. 한정된 국내 자본시장 환경에서는 한계가 분명하게 예상되어 투자자금이 풍부한 해외 사업자들의 국내 방송사업자 투자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해외투자 유치 필요성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여타 방송사업자와 다르지 않음

또한 최근 국제정세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의해 국내 증시의 외화자금 유출이 우려되는 가운데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를 통한 외국자본 유치는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선진화에도 보탬이 될 것임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콘텐츠사업자 제외)에 대하여 적용되는 49%의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 기반 형성을 위한 투자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안 제9조제1항 삭제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의원 등 10인)

2023-11-20 발의

현행법상 방송 및 통신 분야에 있어서 일정한 방송사업자 및 통신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지분 총합이 전체 지분의 49%까지로 제한되고 있음. 이는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 및 통신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음

그러나 통신 분야에 있어서 최근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우리 미래산업으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신규·융합산업들은 첨단산업의 특성상 통신산업 등 다른 관련 산업들과 함께 육성·발전하여야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임. 그런 차원에서 국내 통신산업은 신규·융합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선결적 기반으로 그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음

반면, 국내 통신산업은 대규모 시설투자를 통한 통신망 구축이 필요함에도 한정된 국내경제 규모에서 가능 자원을 이용하여 구축·발전시킬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아직도 5G 통신망 상용화가 미흡한 실정으로 이동통신산업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막대한 추가적인 시설 투자가 필요하며, 이 통신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신규·융합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욱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실정임

이러한 산업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의 자본시장은 외국자본 유치를 통하여 그 규모 자체를 확대함으로써 산업육성을 위한 선진 자본시장으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일정한 기간통신사업자의 국적성 확보 및 외국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 해소를 위해 외국인 지분의 총합이 전체 지분의 49%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엄격한 규제에 따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여 이미 외국인 지분 총합 한도에 달한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신규·융합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해외 사업자들과의 협력 관계 구축 및 대규모 시설투자를 위한 자본 확충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특히, 통신업종에 있어서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에 관한 정성적 심사 제도인 공익성 심사가 도입된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외국인의 경영권 장악 시도가 사라져 공익성 심사를 통하여 외국인에 의한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 침탈 등이 우려되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나아가 최근 국제정세와 같이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국내 증시의 외화자금 유출이 항시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를 통한 외국자본 유치는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이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49%의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내 통신산업의 발전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안 제8조 삭제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의원 등 10인)

2023-11-20 발의

현행법상 방송 및 통신 분야에 있어서 일정한 방송사업자 및 통신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지분 총합이 전체 지분의 49%까지로 제한되고 있음. 이는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 및 통신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음

그러나 방송 분야에 있어서는 최근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면서 그 위상이 매우 높아졌음. 이에 해외 주요 방송미디어 사업자들이 앞다투어 K-콘텐츠 제작 투자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고도의 콘텐츠 제작·유통 역량을 보유한 국내 방송사업자에 대한 투자수요도 높아지고 있음

한편, K-콘텐츠의 위상 강화는 더욱 경쟁력 있는 콘텐츠 확보 경쟁 및 대작 콘텐츠 제작 확대로 이어져 제작비 부담이 빠르게 높아지는 상황임. 이러한 제작환경 변화 속에서 K-콘텐츠의 달라진 위상을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제작자원 조달 환경의 조성이 필수적이므로

투자자금이 풍부한 해외 사업자들의 국내 방송사업자 투자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방송콘텐츠 제작 기반 형성에는 지분투자 방식 등 보다 긴밀한 제휴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또한 최근 복잡한 국제정세에 의한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국내 증시의 외화자금 유출이 우려되는 가운데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를 통한 외국자본 유치는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선진화에도 보탬이 될 것임

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 제외)** 및 **전송망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49%의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 기반 형성을 위한 투자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안 제14조제3항 삭제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의원 등 12인)

2023-11-22 발의

현행법은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구현을 위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민주적 기본질서 존중 등 다양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국민의 기본권 옹호 등 방송사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이유로 보행자의 안전을 해치거나 병원 등 공공시설의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규율할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가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通行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보행자 통행로 확보, 통행안전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관련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것임 (안 제72조의2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3-11-24 제출

현재 핵연료물질 등의 정련·변환·가공 사업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각각 받도록 이원화되어 있는 핵연료주기사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개편하여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도록 일원화함으로써 **원자력 안전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핵연료주기시설 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한편, 원자력 관계 사업자 중 방사선의 장애(障害)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등 (안 제35조,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

- 핵연료주기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핵연료주기시설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의 확보 등 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의 요건을 갖추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및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결과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등에는 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를 받은 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②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 등 (안 제39조의4부터 제39조의7까지 신설)

-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의 확보 등 핵연료주기시설 운영허가의 요건을 갖추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및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결과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등에는 핵연료주기시설 운영허가를 받은 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③ 방사선장해 방지조치 의무 대상자의 합리적 조정(안 제91조제1항 및 제2항)

- 일정 용도나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선동위원소 또는 일정 용도나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거나 이동사용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한 원자력 관계 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중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및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만 하도록 하고, 그 외 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 측정, 건강진단 및 피폭관리 조치 의무 대상자에서는 제외하도록 함

행정안전위원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등 11인)

2023-11-21 발의

현행법은 행정재산 외의 공유재산인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는 경우를 광역자치단체 구역 내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경우,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방 대학의 폐교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를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매입하여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캠퍼스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법의 양여 기준에 맞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시설로 사용하도록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위기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40조)

문화체육  
관광위원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1인)

2023-11-22 발의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을 배포, 제작, 유통하는 등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프로그램 등에 대한 꾸준한 수요와 함께 불법프로그램 등을 배포, 제작, 유통하는 등의 범죄행위 및 이로 인한 범죄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의로 불법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 프로그램 등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32조제1항제11호 신설, 제44조제1항제2호, 제48조제2항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의원 등 11인)

2023-11-21 발의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함)을 정하려는 경우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공급약관에서는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수입 연료의 국제가격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시장에서 천연가스 등 수입 연료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기 생산비용이 상승하였으나, 소비자 물가의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에 수입 연료가격의 인상분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아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를 가중시키고 있음

이와 반대로 수입 연료의 국제가격이 인하된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적절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 공급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료비 연동제를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하는 전기요금에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연료의 국제가격 변동분이 분기별로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기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관련 공기업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제3항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 계통 확보 특별법안  
(양의원영의원 등 12인)

2023-11-20 발의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업들의 RE100 가입 등으로 재생 에너지 확대와 전력시장의 정책변화가 필요함.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계획된 송·배전설비의 적기 건설과 신규 전력망 인프라의 보강이 필요함

하지만 전력망 인프라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촉진법」은 재생에너지 전원에 특정되지 않으며, 주민수용성 확보도 부족한 면이 있음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을 법제화하는 한편, 국가 예산 투입의 근거를 마련하여 송·배전 설비의 적기 건설을 촉진함으로써 탄소중립시대와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이 법의 목적을 송·배전사업자의 전력 계통 연계설비 개발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고 에너지 탄소중립 적기 달성에 이바지하여 에너지 분야 중장기 비전과 정책과제 달성하는 것으로 규정함 (안 제1조)
- ② 에너지 분야 중장기 비전과 정책과제 및 전력 계통 연계설비 등에 관한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 ③ 전력 계통 연계 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배전사업자가 시행하며 송·배전사업에 대한 회계와 판매사업에 대한 회계는 분리됨 (안 제3조 및 제4조)
- ④ 이 법은 전력 계통 연계설비 개발에 관하여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짐 (안 제6조)
- ⑤ 전력 계통 연계설비 개발에 대한 중요사항은 전기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 (안 제7조)
- ⑥ 전력 계통 연계설비 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열람 및 주민의견의 청취, 승인취소 등을 규정함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⑦ 환경영향평가법, 해양환경관리법, 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 특례와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에 대해 규정함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 ⑧ 개발사업용지의 취득과 사용, 보상절차와 관련 업무의 위탁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17조부터 제34조까지)
- ⑨ 전력 계통 연계설비 개발사업의 참여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함 (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 ⑩ 전력 계통 연계설비를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개발 및 사업구역 입지 선정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한 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규정함 (안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하여 국제가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생김

하지만 소비자 물가의 안정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적자가 32조 6,500억 원에 달하고 올해 2분기까지 8조 4,500억 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함. 또한, 한국가스공사의 적자에 해당하는 누적 미수금도 12조 원에 달하는 등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화와 파산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됨

유가와 발전용 가스요금이 원가에 연동되어 있는 것과 달리 전기요금과 난방용 가스요금은 사실상 물가관리의 수단으로 인식되며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면서 원가 이하의 싼 가격이 유지되는 비정상적 발생함

에너지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에너지공기업 부실화, 시중자금시장 고갈, 에너지전환 속도가 느려지는 것 뿐만 아님

원가 이하의 싼 전기요금은 화석연료 보조금으로 인식되어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에너지 다소비 수용가가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은 현상이 발생하면서 더 이상 기업경쟁력으로 작동하지도 않으며 공정하지도 않은 요금체계임

에너지 요금이 물가안정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전문적인 판단을 할 독립적인 규제 기관이 필요함

이에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던 전기위원회를 대폭 확대 강화하여, 주요 에너지 선진국에서처럼 전기·도시가스·열에너지 등과 관련한 주요 인·허가 제도와 소비자가격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가스도매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가스위원회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안 제3조)
- ② 전기가스위원회는 가스도매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으며,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안 제9조 및 제10조)
- ③ 전기가스위원회는 가스공급계획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경우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음 (안 제18조제5항)
- ④ 가스도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전기가스위원회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안 제20조)

- ⑤ 전기가스위원회는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에는 가스사용자에 대하여 도시가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안 제24조제1항)
- ⑥ 전기가스위원회는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로 하여금 배관시설의 이용제공 거부 등의 행위중지를 명할 수 있음 (안 제39조의7제2항)

## 보건복지위원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1인)**

2023-11-21 발의

첨단재생의료는 손상된 신체의 세포·조직 등을 재생하여 정상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의료기술로 기존에 치료가 어려웠던 희귀·난치병을 비롯한 각종 질환에 새로운 치료법을 제공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첨단재생의료는 중증·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임상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허용되어 있어 많은 환자가 시술을 받기 위해 큰 비용을 무릅쓰고도 해외로 원정 치료를 가고 있는 실정임

이는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저해되는 것은 물론이고, 제도권 밖 치료행위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에 국한돼 있는 연구대상 제한을 철폐하여 보다 다양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학적 안전성과 적정성이 담보되는 범위 안에서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첨단재생의료의 미래 산업으로서 국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안 제2조, 제5조, 제7조 및 제10조 등)

## 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안(고영인의원 등 21인)**

2023-11-22 발의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돌봄 인력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한 숙련된 간호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서 고도로 발전된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등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숙련된 간호사등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지역 간 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나,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이에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이 법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간호사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규정함 (안 제7조)
- ③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하였고, 불법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11조)
- ④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12조)
- 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의 업무(안 제1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 ⑥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이하 “간호사중앙회”라 함)를 설립하도록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중앙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며,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및 제18조)
-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
-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간호사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함 (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 ⑨ 간호사등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 및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의료기관의 무면허의료행위등지시를 간호사등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부담함을 규정함 (안 제28조 및 제29조)

## 보건복지위원회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의원 등 13인)

2023-11-24 발의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건강한 노화 요구와 함께 환자식 즉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의료용도식품을 특수의료용도식품 외의 식품과 동일하게 품목제조관리, 안전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었음

그러나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질병, 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특별한 영양요구량을 가지거나 체력 유지·회복이 필요한 질환자의 영양 상태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의 임상적 상태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할 경우 영양 불량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있어 그에 맞는 특성화된 관리가 요구됨

이에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여 제조되는 식품에 대한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위생 및 품질관리를 위해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는 등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특수성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료용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6호 신설, 제37조 및 제41조의2)

## 보건복지위원회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의원 등 13인)

2023-11-24 발의

장기간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미리 연간 수입 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서류 및 현장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를 총리령 및 고시로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승인 절차 및 검사 생략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계획수입 승인을 받은 영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제재나 적절한 운영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하위법령으로 운영 중인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에 대한 관리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안전성이 확인된 수입식품등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면서 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안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9조)

## 보건복지위원회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 등 11인)

2023-11-24 발의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약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백신과 필수약품 등을 자력으로 개발·생산 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국가 간 제약산업 육성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우리나라도 제약주권을 굳건히 확립하여 제약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 비축사업이나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할 때 국내 생산 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의 내용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계획을 포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제약주권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3조의2 및 제4조)

## 환경노동위원회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2인)

2023-11-21 발의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개인의 고충 등 업무저해요인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근로자의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이 심리적으로 취약한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동료, 나아가서는 가정과 사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보건 건강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83조제1항단서 및 제83조의2 신설)

## 환경노동위원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의원 등 11인)

2023-11-22 발의

현행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달리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연차 유급 휴가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근로 시간에 비례하도록 산정하고 있고,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어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고, 숙련된 근로자 이탈을 방지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 60조제6항제4호 신설)

#### 환경노동위원회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2023-11-22 발의

현행법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미이행한 자에 대해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폐기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고 그 비용을 관련법령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가 행정대집행 비용의 납부를 회피할 의도로 잠적하거나 재산은닉 등의 방법으로 체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세징수법에 따른 재산조회와 압류 등의 조치만으로 대집행 비용을 징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행정대집행 비용을 체납하는 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체납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처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안 제14조의2 및 제 49조제5항)

#### 환경노동위원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2인)

2023-11-22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할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업무상 재해 인정 및 판정에 필요한 조사가 2019년 513일에서 2023년 8월 기준 1,072일로 2배 이상 길어지면서 적시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특히 저소득 재해근로자는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 제대로 된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임. 이런 이유로 저소득 재해근로자의 사회 복귀가 늦어지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심지어 산재 조사 중 사망한 재해근로자가 연평균 50명가량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의 지급이 결정되기 전에도 가계소득 급감으로 최저 생계수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보험급여의 일부를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안 제82조의2 신설)



## 환경노동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의원 등 10인)

2023-11-23 발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제1호에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안전조치 장소가 건설현장 등 사업주가 직접 소유·운영하는 장소로 국한되어 있음. 그러나 일반 건물 옥상이나 아파트 등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발생 가능한 환경에서도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보강 등 추가적인 예방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를 위해서는 임대인(건물주)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주민 동의 를 반드시 받아야 함. 하지만 건물주 또는 주민들이 건물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하는 상황이 빈번 하게 발생하여 사업자들이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를 하려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못해 근로자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음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실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자만 처벌되는 상황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음. 따라서 동일 유형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건물주) 또는 주민 (공동주택)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안전조치 주체를 임대인(건물주)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안 제38조제5항)

## 환경노동위원회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2023-11-23 발의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 에게 등록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 실제로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참여하 는 사람에 대한 자격기준이 없어 환경영향평가서등에 대한 신뢰도 저하 우려가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환경영향평가기 술자가 아닌 사람은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품질을 제 고하고자 함 (안 제56조제1항제7호, 제74조제2항제5호의2)

또한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주청이 대행 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없어 대행비용 산정기준 대비 저가 발주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저가 발 주는 환경영향평가서등 거짓·부실 작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이 정 한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안 제62조)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2023-11-21 발의

현행법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여 건설공사의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는 건설기술 외에도 법률·금융·회계 및 정보통신 등 건설사업에 필요한 모든 영역을 포괄함

그런데 현행 제도는 건설기술에 편중된 측면이 있고 건설사업관리자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엄격하지 않아, 발주자가 유사 건설사업관리자를 배제하고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따라서 발주자의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에 기여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분야별 전문화, 공정 경쟁 유도 및 업 균형발전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제도를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 제도와 동일하게 개선하고자 함 (안 제26조제2항 신설 등)

### III. 국회 주요 의사일정(안)

#### 1. 본회의 일정

| 구분  | 일시             | 내용                                |
|-----|----------------|-----------------------------------|
| 본회의 | 11/30(목) 14:00 | 제410회 국회(임시회) 제12차 본회의<br>- 안건 심의 |
| 본회의 | 12/1(금) 14:00  | 제410회 국회(임시회) 제13차 본회의<br>- 안건 심의 |

#### 2. 상임(특별)위원회 일정

| 구분    |          | 일시             | 내용                        |
|-------|----------|----------------|---------------------------|
| 정무위   | 법안심사제1소위 | 11/28(화) 14:00 | - 법안 심사                   |
|       | 전체회의     | 11/30(목) 10:00 | - 법안 의결 등                 |
| 기재위   | 조세소위     | 11/27(월) 10:00 | - 법안 심사                   |
|       | 예결소위     | 11/28(화) 14:00 | - 보증동의안 심사                |
|       | 조세소위     | 11/28(화) 15:00 | - 법안 심사                   |
|       | 전체회의     | 11/29(수) 14:00 | - 법안 및 보증동의안 의결           |
| 교육위   | 법안소위     | 11/28(화) 10:15 | - 법안 심사                   |
|       | 전체회의     | 11/29(수) 16:00 | -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법안 의결 |
| 외통위   | 법안소위     | 11/30(목) 09:00 | - 법안 심사                   |
| 문체위   | 전체회의     | 11/30(목) 10:00 | - 법안 상정 및 의결              |
| 산자중기위 | 중소기업소위   | 11/28(화) 10:00 | - 법안 심사                   |
|       | 산업특허소위   | 11/29(수) 10:00 | - 법안 심사                   |
|       | 전체회의     | 11/30(목) 10:00 | - 법안 의결                   |
| 환노위   | 전체회의     | 12/1(금) 10:00  | -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             |
| 국토위   | 국토법안심사소위 | 11/29(수) 10:00 | - 법안 심사                   |
|       | 전체회의     | 11/30(목) 10:00 | - 법안 의결                   |

|        |      |                |                                                                                 |
|--------|------|----------------|---------------------------------------------------------------------------------|
| 인사청문특위 | 전체회의 | 11/28(화) 09:30 | 헌법재판소장(이종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위<br>-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        | 전체회의 | 11/28(화) 10:00 |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위<br>-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임명동의안<br>- 자료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 |

##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발간 등)

| 구분              | 일시                | 내용                                                            | 주최                       | 장소                   |
|-----------------|-------------------|---------------------------------------------------------------|--------------------------|----------------------|
| 토론회<br>및<br>세미나 | 11/27(월)<br>10:00 |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 3년, 성과와 과제는?<br>- 아동보호체계 추진성과 및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 | 최재형 의원실,<br>보건복지부        | 국회도서관<br>소회의실        |
|                 | 11/27(월)<br>10:00 |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br>정책토론회                             | 김병욱 ·<br>황희 의원실 등        | 의원회관<br>2소회의실        |
|                 | 11/27(월)<br>14:00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세미나(경제·민생)<br>- 대출금리 공정한가?                      | 국회공정사회포럼                 | 의원회관<br>3간담회실        |
|                 | 11/27(월)<br>14:00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새로운 도약, 그 해법은?                                      | 노웅래 · 임이자<br>의원실, 환경부    | FKI TOWER 컨<br>퍼런스센터 |
|                 | 11/27(월)<br>15:00 | 2023 교권 보호와 학교 관리자의 역할 국회 토론회                                 | 강민정 의원실                  | 의원회관<br>2세미나실        |
|                 | 11/28(화)<br>09:30 | 이--팔(이스라엘-팔레스타인)과 남·북한 갈등구조<br>비교와 시사점                        | 김홍걸 의원실 등                | 의원회관<br>5간담회실        |
|                 | 11/28(화)<br>10:00 | 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                                      | 김성원 의원실,<br>THE FACT     | 의원회관<br>8간담회실        |
|                 | 11/28(화)<br>10:00 | 인천고등법원 설치 국회정책토론회                                             | 김교흥 ·<br>신동근 의원실         | 국회도서관 소<br>회의실       |
|                 | 11/28(화)<br>14:00 | 금융기관 영업이익의 기금화 확대를 위한 토론회<br>- 은행의 독과점 이익, 은행만을 위한 것인가?       | 양정숙 의원실                  | 의원회관<br>1간담회실        |
|                 | 11/28(화)<br>14:00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 발전 방안 세미나<br>- 사용후 배터리 어디로 갈 것인가?              | 김정재 ·<br>김성원 의원실         | 의원회관<br>3세미나실        |
|                 | 11/29(수)<br>10:00 | 건설업 외국인력 활용도 개선방안 토론회                                         | 지성호 의원실                  | 의원회관<br>1소회의실        |
|                 | 11/29(수)<br>10:00 |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 및 안정공급체계 구축을<br>위한 제도적 방안                        | 서영석 · 신현영 ·<br>강은미 의원실 등 | 의원회관<br>8간담회실        |
|                 | 11/29(수)<br>10:00 | 정신건강정책의 혁신,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 김예지 의원실                  | 의원회관<br>7간담회실        |
|                 | 11/29(수)<br>14:00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 동물복지국회포럼                 | 의원회관<br>5간담회실        |
|                 | 11/29(수)<br>14:00 | 2023년 학생 중심 흡연예방 정책 국회토론회<br>- 청소년이 말하는 담배 없는 세상              | 신현영 ·<br>서정숙 의원실 등       | 국회도서관<br>소회의실        |

|          |                   |                                                                      |                    |                |
|----------|-------------------|----------------------------------------------------------------------|--------------------|----------------|
|          | 11/29(수)<br>14:00 | 자유왕래를 중심으로 한 통일정책 방향전환                                               | 김두관 의원실 등          | 의원회관<br>3세미나실  |
|          | 11/29(수)<br>14:00 | 탈북민 창업 미래전략을 위한 제도 통찰과<br>새로운 방향 모색 토론회                              | 지성호 의원실            | 의원회관<br>1세미나실  |
|          | 11/29(수)<br>14:00 | 표현과 언론 자유에 대한 국가 검열 철폐와<br>자율규제의 새 패러다임                              | 국회공정사회포럼           | 의원회관<br>2간담회실  |
|          | 11/29(수)<br>15:00 | 선박금융 활성화 방안 간담회                                                      | 김희곤 의원실            | 의원회관<br>10간담회실 |
|          | 11/30(목)<br>09:00 | 공공주택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br>-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                                   | 하태경 ·<br>김병주 의원실   | 의원회관<br>대회의실   |
|          | 11/30(목)<br>13:00 | 스웨덴의 정치, 복지국가, 건강                                                    | 이장섭 의원실            | 의원회관<br>3간담회실  |
|          | 12/1(금)<br>11:00  | 2023 국회철강포럼 오찬간담회                                                    | 국회철강포럼             | 켄싱턴호텔<br>센트럴파크 |
|          | 12/1(금)<br>13:00  | 1인 가구 치안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                                                | 조은희 의원실 등          | 의원회관<br>1간담회실  |
|          | 12/1(금)<br>15:00  | 한·일평화포럼<br>- 윤석열식 한일관계 해법 이대로 좋은가                                    | 송재호 ·<br>김홍걸 의원실 등 | 의원회관<br>6간담회실  |
| 자료집<br>등 | 11/28(화)          | 「최신 외국입법정보」 제237호 발간<br>- 프랑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세대 간 동거계약 입법례              | 국회도서관              |                |
|          | 11/29(수)          | 「금주의 서평」 제655호 발간<br>- 도서명 : 셸럽시대<br>- 저 자 : 김정섭                     |                    |                |
|          | 11/29(수)          | 「World & Law」 2023-22호 발간<br>-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 함께하려면?                  |                    |                |
|          | 11/27(월)<br>10:30 | 「최근 가계부채 동향」 전문가 간담회<br>- 최근 가계부채 현황 및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 국회예산정책처            | 의정관<br>505호    |
|          | 11/29(수)<br>10:00 | 「한국의 수소에너지 기술산업」 전문가 간담회<br>- 한국 수소산업 밸류체인 단계별 경제적 현황 및 산업<br>활성화 전략 |                    | 비대면<br>영상회의    |
|          | 11/29(수)<br>13:30 | 「2024년 경제전망과 잠재성장률」 전문가 간담회                                          |                    | 의정관<br>417호    |

|  |                   |                                          |         |               |
|--|-------------------|------------------------------------------|---------|---------------|
|  | 11/28(화)<br>14:00 | 「디지털분야 법률 현황과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입법 과제」 세미나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 | 입법조사처<br>대회의실 |
|  | 12/1(금)<br>13:30  | 「제1회 행복 포럼」 개최<br>- 사회지표로서의 행복, 효용과 발전방향 | 국회미래연구원 | 의원회관<br>2세미나실 |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10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시                | 내용                                                             | 주최                       | 장소             |
|-----------------|-------------------|----------------------------------------------------------------|--------------------------|----------------|
| 토론회<br>및<br>세미나 | 11/20(월)<br>14:00 | <b>AI가 바꿀 국방의 미래 모습과 대응 전략</b>                                 | 김종민 ·<br>성일종 의원실         | 의원회관 2<br>소회의실 |
|                 | 11/20(월)<br>14:00 | <b>위기의 교육 현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b><br>-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을 돌아 보다        | 국회공정사회포럼                 | 의원회관<br>2세미나실  |
|                 | 11/20(월)<br>14:00 | <b>한국 정치 양성평등 어디까지 왔나?</b>                                     | 권영세 의원실 등                | 의원회관<br>1소회의실  |
|                 | 11/21(화)<br>14:00 | <b>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분할·설립 제도개선 토론회</b>                             | 권인숙 · 김의겸 ·<br>장혜영 의원실 등 | 의원회관<br>3세미나실  |
|                 | 11/21(화)<br>15:00 | <b>상가임대차 피해사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b>                             | 박주민 ·<br>배준영 의원실 등       | 의원회관<br>3간담회의실 |
|                 | 11/22(수)<br>14:00 | <b>사구의 날 제정과 국립사구센터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b>                          | 서삼석 의원실,<br>(사)섬연구소 등    | 의원회관<br>8간담회의실 |
|                 | 11/22(수)<br>15:00 | <b>농림학교 긴급진단 국회토론회</b>                                         | 강성희 의원실,<br>민주노총 등       | 의원회관<br>3간담회의실 |
|                 | 11/22(수)<br>15:30 | <b>COP28 협상 전망과 대응 전략</b>                                      | 한정애 의원실 등                | 의원회관<br>3세미나실  |
|                 | 11/23(목)<br>10:00 | <b>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율주행차 규제 대응 방향<br/>법제세미나</b>                 | 김희곤 의원실                  | 의원회관<br>1세미나실  |
|                 | 11/23(목)<br>14:00 | <b>대학 강사의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토론회</b>                                 | 강민정 ·<br>이은주 의원실 등       | 의원회관<br>2간담회의실 |
|                 | 11/24(금)<br>10:00 | <b>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b>                           | 김성환 ·<br>우원식 의원실 등       | 의원회관<br>9간담회의실 |
|                 | 11/24(금)<br>14:00 | <b>한국형 은퇴자마을(도시) 도입에 관한 정책토론회</b>                              | 이종배 ·<br>이헌승 의원실 등       | 의원회관<br>9간담회의실 |
| 자료집<br>등        | 11/21(화)          | <b>「최신 외국입법정보」 제236호 발간</b><br>- 미국의 대중국 투자규제 입법례              | 국회도서관                    |                |
|                 | 11/22(수)          | <b>「금주의 서평」 제654호 발간</b><br>- 도서명 : 1%를 보는 눈<br>- 저 자 : 크리스 존스 |                          |                |

|          |                                                                             |         |  |
|----------|-----------------------------------------------------------------------------|---------|--|
| 11/22(수) | <b>「Data &amp; Law」 2023-11호 발간</b><br>- 데이터로 보는 병역자원                       |         |  |
| 11/22(수) | <b>「현안, 외국에선?」 71호 발간</b><br>- 2050년을 대비한 일본의 과학기술 정책                       |         |  |
| 11/20(월) | <b>「NABO Focus」 제66호 발간</b><br>-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디지털 개혁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 국회예산정책처 |  |
| 11/21(화) | <b>「NABO Focus」 제67호 발간</b><br>- 최근 세수오차 발생원인과 2024년 국세수입 전망                |         |  |
| 11/22(수) | <b>「예산춘추」 통권 제72호 발간</b>                                                    |         |  |
| 11/22(수) | <b>「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세미나 개최</b>                                         | 국회입법조사처 |  |
| 11/20(월) | <b>「Futures Brief」 제23-19호 발간</b><br>- 일본 「성육기본법」(成育基本法) 관련 소아의료 체계 소개 및 의의 | 국회미래연구원 |  |

##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1.20~11.26)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 분야        | 내용                                                                                           |
|----------|-----------|----------------------------------------------------------------------------------------------|
| 11/21(화) | 건설/부동산    | <a href="#">부실 해외 부동산 펀드 대응방안</a>                                                            |
| 11/21(화) | 기업지배구조    | <a href="#">[주주경영권분쟁팀 뉴스레터] 4. 의결권 부당제한과 임직원의 책임</a>                                         |
| 11/22(수) | 방송통신(TMT) | <a href="#">신산업 성장 촉진을 위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핵심과제 추진</a>                                             |
| 11/22(수) | 환경        | <a href="#">전기차 폐배터리 등 7개 품목이 ‘순환자원’으로 지정되어 폐기물 규제가 면제됩니다</a><br>-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백운일** | 전문위원

[이메일주소](#)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